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 - 취득세·등록세·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,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로 인정하여 감면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 - 「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감면」 조문 내용 일부를 「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」 조문으로 분리 신설하고,
 -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도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처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여 지방세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,
 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수정하고,
 - 「오지개발촉진법」이 폐지(2008. 3. 28)되면서 「농어촌정비법」 경과조치에 규정하고 있어, 「농어촌정비법」의 규정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하였으며,
 - 「정부조직법」의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수정하고,
 - 개발제한구역과 취약지구지정대상 지역내에서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법률을 『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에서 『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으로 수정하였으며,
 - 「향교재산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하고,
 - 창고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있어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감면조문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,
-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맞게 고성군세 감면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○ 2009. 2. 1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